

사천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호)

운영 위원회

2003.

1. 23

1. 심사경과

가. 2003. 1. 14: 박종권의원의외 4인 발의

나. 2003. 1. 14 : 운영위원회 회부

다. 2003. 1. 21 :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1차운영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서면)

가. 제안이유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조정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회에게 지급되는 일비 또는 여비를 별표에 의하여 지급함을 사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으로
변경 (별표삭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한용)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따라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변경시 조례
개정에 따른 번거러움을 없애고 집행에 연속성을 유지함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
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